

의안번호	제 338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4월 일 (제 279 회)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9년 4월 8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8
----------	-----

제출연월일 : 2009년 4월 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도시계획조례 제정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를 폐지하여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투명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관계법령의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지정, 용도지구의 지정 삭제(안 제6조, 제7조)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조항을 삭제하고 당연직위원 임명 조항 신설(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도시계획위원회 설치”를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을 “법 제113조제1항 각 호의”로 하고,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를 “영 제111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은 행정부지사, 정책관리실장, 균형발전국장, 건설방재국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원장 등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회의의 비공개 등”을 “회의의 비공개”로 하고, 같은 조 중 “회의 및 회의록은”을 “회의는”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6조(특정용도제한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p> <p>1.숙박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시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구</p> <p>2.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락시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구</p> <p>3.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구</p>	<p>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6조(특정용도제한지구의 지정)----- ----- -----.</p> <p>1.(현행과 같음)</p> <p>2.(현행과 같음)</p> <p>3.<삭 제></p>
<p>제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신설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1.보행자우선지구 :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p> <p>2.주거환경보호지구 :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p> <p>3.농·수산업지구 : 농 어 축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농 어 축산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p> <p>4.시계(市界)관리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화산을 방지하고 도시외곽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p> <p>②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은 시·군조례에 의한다.</p>	<p>제7조(용도지구의 지정) <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4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u>제8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신설)</u></p>	<p>제4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u>제8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법 제113조제1항 각호의 ----- 영 제111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u> <u>② 영 제1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은 행정부지사, 정책관리실장, 균형발전국장, 건설방재국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u></p>
<p>제9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p>제9조 (기능) <삭 제></p>
<p>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u><개정 2006. 12. 22></u>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08. 7. 1>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❷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p>	<p>제10조(구성) <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1. 충청북도의회 의원</p> <p>2. 도 소속 공무원</p> <p>3. 토지이용·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 또는 농림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p> <p>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p>	
<p>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p> <p>②~③ (생략)</p>	<p>제11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①<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 (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⑤ (생략)</p>	<p>제12조 (회의 운영) ①<삭 제> ②<삭 제> ③~⑤ (현행과 같음)</p>
<p>제18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p>	<p>제18조 (회의의 비공개) ----- 회의는 -----.</p>
<p>제1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9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한다.</p>

관 계 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 ②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3조의2 (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 (운영세칙)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 ·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 ·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 · 도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 · 도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 · 건축 · 주택 · 교통 · 환경 · 방재 · 문화 · 농림 ·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3조의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 법 제113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법 제113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③법 제113조제6항 본문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법 제11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라 함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1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4조 (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지구 등의 행위제한내용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평가단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